

【 5】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정이유

-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하여 각 자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로수의 수종, 규격, 식재기준 (안 제4조 내지 제6조)
- 가로수 관리방법과 시기 (안 제9조 내지 제13조)
 - 간식 및 보식 대상 가로수 및 식재시기
 - 가지치기방법 및 기준
 - 가로수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방법
 - 외과수술 등의 방법
 - 지형과 토양보호
- 가로수의 보호틀, 보호덮개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과 종류 규정 (안 제14조)
- 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승인 절차 및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로수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토록 규정 (안 제20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 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로
 - 나. 연도 등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의한 도로
 -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장을 말한다.
3. "갱신"이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단,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5.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가로수 조성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양주시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단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하여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 기준) ①양주시의 가로수는 별표 2에 의거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지하고가 2m이상으로 하되, 수종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식재부지의 입지여건에 따라 수목성장에 따른 공간규모를 고려하여 교통시야의 차단, 건물과의 인접으로 인한 피해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1. 교목(키큰나무)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무리지어 식재하거나 여러수종을 섞어서 식재 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키작은나무)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식재집단은 입지여건에 따라 가로수 한 주당 독립하여 조성하거나, 동일노선 내에서 연결형으로 조성할 수 있다.

다.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무리지어 식재하고, 하나의 식재집단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여러수종을 섞어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 식재시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거로 인하여 뿌리분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로수관리청과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로수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려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가로수 관리

제9조(갱신 및 보식) 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그 밖의 원활한 가로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청에서 판단한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를 실시

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지
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갱신·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액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民間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조성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립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 다.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 라.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조성계획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

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압력을 받아 토양이 단단해지고 통기성이 줄어들거나,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시설물) ①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초화류 등으로 대체하여 식재도록 우선 검토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관리청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 부서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관리청이 산출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하고자 하는 가로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4의 산정기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층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피해목, 노쇠목 등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⑨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

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점검 등) ① 관리청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간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록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보식·간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를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 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유지)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신청·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제4조 관련)

1. 수형이 정돈 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2]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6조 제1항)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총고직경 14cm이상, 근원경 16cm이상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 10미터 미만	총고직경 12cm이상, 근원경 14cm이상	현지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 7미터 미만	총고직경 10cm이상, 근원경 12cm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총고직경 8cm이상, 근원경 10cm이상	

[별표 3]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4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현지 및 주 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 류 및 유형을 달리 할수 있 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별표 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 피해 발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0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자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5조 제2항)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출고직경 : , 균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양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정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불임 2>

관계법령발췌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 등 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 등을 대상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사항)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림 등의 추진체계 정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시림 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6.20]

제18조의2 (도시림 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 등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림 등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자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19조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개정 2008.6.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 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 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 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 등
 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도시림 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08.2.29, 2008.6.20>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 제23조 (도시림의 조성·관리) ①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원림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림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림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
 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림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
 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

장이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산림을 대상으로 도시녹지의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녹지율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제24조 (가로수 조성 · 관리)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 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업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③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 관리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